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3. 3. 22(수) 10:00

제24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
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17호
- 나. 제 출 자 : 고영찬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3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3. 10.

2. 제안이유

금천구에 거주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, 디지털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의 수립(안 제4조 및 제5조)
- 라. 추진사업 및 사업의 위탁(안 제7조 및 제8조)
- 마. 홍보 및 포창(안 제9조 및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 - 2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
 - 3)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23. 3. 11. ~ 2023. 3. 17.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금천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높이며 디지털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3)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의 수립(안 제4조 및 제5조)
 - 정보 격차 해소의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함
 -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
- 4) 추진사업 및 사업의 위탁(안 제7조 및 제8조)
- 5) 홍보 및 포창(안 제9조 및 제10조)

다. 검토의견

- 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1조는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, 정보통신, 의사소통 등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장애라는 이유로 주민의 알 권리,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하다 판단됨
-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에 맞추어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□ 「장애인복지법」

[시행 2022. 12. 22.] [법률 제18625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3. 1. 28.] [법률 제18334호, 2021. 7. 27., 일부개정]

제8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,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·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